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9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박상웅 · 조은희 · 배준영
윤한홍 · 고동진 · 박정하
권성동 · 김미애 · 송석준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산업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이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3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③ ~ ⑦ (생략)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이 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제2 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2</u>

3.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u>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생 략)	<u>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	--